

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종전의 「재난관리법」이 폐지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·수습·복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관련법령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

3. 주요골자

가.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(안 제3조 내지 제6조)

- 운영기간(안 제3조)

- 자연재난대책기간
- 인적재난대책기간
-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: 4. 1 ~ 9. 30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
- 그 밖에 기반보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- 구성 및 임무(안 제4조)

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, 통제관은 자연·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·인적재난업무담당국장이,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,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.
- 담당관은 자연·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자연·인적재난업무담당과장이,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각각 소관 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.

나.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(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)

- 재난대비체제설정
- 상황판단회의
-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
-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
- 근무자의 복무

다. 재난상황관리체제 구축(안 제12조 내지 안 제21조)

○ 통합지원의 요청(안 제13조)

-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단계에 대하여 책임 대응하여야 하며,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또는 부산광역시 기반재난대책본부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

○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구축(안 제1조)

- 본부장은 각종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라.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제 구축(안 제22조 내지 안 제28조)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-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. 3. 11부로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되고 있는 각종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안전망확보와 재난의 예방, 수습, 복구 등 대응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, 조정, 총괄코자
- 기구설치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제구축 등 일련의 조치는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법령과 부산시 조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